産業財産權制度 대폭 改正

1.13 公布…9.1부터 施行

特許法改正法律

法律第 4207號
1990.1.13 公布

第36條(先願) ① 동일한 發明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特許出願이 있는 때에는 먼저 特許出願한 者만이 그 發明에 대하여 特許를 받을 수 있다.

② 동일한 發明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特許出願이 있는 때에는 特許出願人의 協議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特許出願人만이 그 發明에 대하여 特許를 받을 수 있다. 協議가 成立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特許出願人도 그 發明에 대하여 特許를 받을 수 없다.

③ 特許出願에 대한 發明과 實用新案登錄出願에 대한 考案이 동일한 경우 그 特許出願과 實用新案登錄出願이 다른 날에 出願된 것일 때에는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하고, 그 特許出願과 實用新案出願이 같은 날에 出願된 것일 때에는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④ 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이 無效 또는 취하된 때에는 그 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發明者 또는 考案者가 아닌 者로서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 또는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人이 아닌 者가 한 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特許廳長은 第2項의 경우에는 特許出願人에게 期間을 정하여 協議의 결과를 申告할 것을 命하고 그 期間내에 申告가 없는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는 成立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第37條(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移轉등) ①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는 移轉할 수 있다.

②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는 質權의 目的으로 할 수 없다.

③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가 共有인 경우에는 각 共有者가 다른 共有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持分을 讓渡할 수 없다.

第38條(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 ① 特許出願전에 있어서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는 그 承繼人이 特許出願을 하지 아니하면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

② 동일한 者로부터 承繼한 동일한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特許出願이 있는 때에는 特許出願人의 協議에 의하여 정한 者 외의 承繼는 그 效力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者로부터 承繼한 동일한 發明 및 考案에 대한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 및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에 대하여 같은 날에 特許出願 및 實用新案登

錄出願이 있는 때에도 第2項과 같다.

④ 特許出願후에 있어서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 및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에 대하여 같은 날에 特許出願 및 實用新案登錄出願이 있는 때에도 第2項과 같다.

④ 特許出願후에 있어서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는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特許出願人이 名義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면 그 效力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⑤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相續 기타 一般承繼가 있는 경우에는 承繼人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特許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⑥ 동일인으로부터 承繼한 동일한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에 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申告가 있는 때에는 申告를 한 者의 協議에 의하여 정한 者외의 者의 申告는 그 效力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⑦ 第36條第6項의 規定은 第2項 및 第6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39條(職務發明) ① 從業員·法人의 任員 또는 公務員(이하 "從業員등"이라 한다)이 그 職務에 관하여 發明한 것이 性質상 使用者·法人 또는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이하 "使用者등"이라 한다)의 業務範圍에 속하고, 그 發明을 하게 된 행위가 從業員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職務에 속하는 發明(이하 "職務發明"이라 한다)에 대하여 從業員등이 特許를 받았거나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承繼한 者가 特許를 받았을 때에는 使用者등은 그 特許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② 公務員의 職務發明은 國家가 承繼하며, 國家가 承繼한 公務員의 職務發明에 대한 特許權은 國有로 한다.

③ 從業員등이 한 發明중 職務發明을 제외하고는 미리 使用者등으로 하여금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 또는 特許權을 承繼시키거나 使用者등을 위하여 專用實施權을 設定한 契約이나 勤務規程의 條項은 이를 無效로 한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有로 된 特許權의 處分 및 管理는 國有財産法第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特許廳長이 이를 管掌한다.

⑤ 第4項의 國有特許權의 處分 및 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0條(職務發明에 대한 補償) ① 從業員등은 職務發明에 대하여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 또는 職務發明에 대한 特許權을 契約 또는 勤務規程에 의하여 使用者로 하여금 承繼하게 하거나 專用實施權을 設定한 경우에는 정당한 補償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은 額을 決定함에 있어서는 그 發明에 의하여 使用者등이 얻을 이익의 額과 그 發明의 完成에 使用者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從業員등이 정당한 決定方法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③ 公務員의 職務發明에 대하여 第3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가 이를 承繼한 경우에는 정당한 補償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이 경우 補償金의 支給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使用者등은 從業員등이 한 職務發明의 補償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審議委員會를 둘 수 있다.

第41條(國防상 필요한 發明등) ① 政府는 國防상 필요한 경우에는 外國에의 特許出願을 금지하거나 發明者·出願人 및 代理人에게 그 發明을 秘密로 취급하도록 命할 수 있다. 다만, 政府의 許可를 얻은 때에는 外國에 特許出願을 할 수 있다.

② 政府는 特許出願한 發明이 國防상 필요한 경우에는 特許하지 아니하거나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收用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秘密取扱에 따른 損失에 대하여는 政府는 정당한 補償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하지 아니하거나 收用한 경우에는 政府는 정당한 補償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外國에의 特許出願의 금지 또는 秘密取扱命令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發明에 대하여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秘密取扱命令을 위반한 경우에는 秘密取扱에 따른 損失補償金의 請求權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⑦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外國에의 特許出願의 금지·秘密取扱의 節次·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및 補償金 支給의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2條(特許出願) ① 特許를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特許出願書를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特許出願人의 姓名 및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營業所 및 代表者의 姓名)
2. 特許出願人의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理人의 姓名 및 住所나 營業所
3. 提出年月日
4. 發明의 名稱
5. 發明者의 姓名 및 住所
6. 第54條第3項 및 第55條第2項에 規定된 사항(優先權主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許出願書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明細書와 필요한 書面 및 要約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1. 發明의 名稱
2. 圖面의 簡單한 說明
3. 發明의 詳細한 說明
4. 特許請求範圍

③ 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發明의 詳細한 說明에는 그 發明이 속하는 技術分野에서 통상의 知識을 가진 者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發明의 目的·구성 및 效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第2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特許請求範圍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項(이하 "請求項"이라 한다)이 1 또는 2 이상 있어야 하며, 그 請求項은 다음 各號에 해당하여야 한다.

1. 發明의 詳細한 說明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發明이 명확하고 簡潔하게 기재될 것
3. 發明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

⑤ 第2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特許請求範圍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⑥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要約書의 기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商工部令으로 정한다.

第43條(要約書) 第4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要約書는 技術情報로서의 用途로 사용하여야 하며, 特許發明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

第44條(共同出願)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가 共有인 경우에는 共有者 全員이 共同으로 特許出願을 하여야 한다.

第45條(1特許出願의 범위) ① 特許出願은 1發明을 1特許出願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發明의 개념을 형성하는 1群의 發明에 대하여 1特許出願으로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1特許出願의 요건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6條(節次의 補正) 特許廳長 또는 審判長은 特許에 관한 節次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期間을 정하여 補正을 命할 수 있다.

1. 第3條第1項 또는 第6條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 정하는 方式에 위반된 경우
3. 第82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手數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第47條(出願公告決定전의 補正) ① 特許出願人은 特許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의 요지를 變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第2項 및 第50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1年3月 이내에 特許出願書에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을 補正할 수 있다.

1. 特許出願日
2. 第5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隨伴하는 特許出願에 있어서는 그 優先權主張日
3.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隨伴하는 特許出願에 있어서는 同項에서 規定하는 先出願의 出願日
4. 第54條第1項 또는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2 이상의 優先權主張을 隨伴하는 特許出願에 있어서는 해당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된 出願日중 最先日

② 特許出願人은 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1年3月을 경과한 후 出願公告決定謄本의 송달전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變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特許出願書에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을 補正할 수 있다.

1. 第59條의 規定에 의한 出願審査의 請求와 동시에 補正하는 경우
2. 第6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月 이내에 補正하는 경우
3. 第63條의 規定에 의한 意見書提出期間내에 補正하는 경우
4. 第167條의 規定에 의한 拒絶査定에 대한 抗告審判의 請求日부터 30日 이내에 補正하는 경우.

第48條(要旨變更) 出願公告決定謄本의 송달전에 特許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안에서 特許請求範圍를 增加·減少 또는 變更하는 補正은 그 요지를 變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第49條(明細書등의 補正과 要旨變更) 特許提出書에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관하여 出願公告決定謄本의 송달전에 한 補正이 明細書 또는 圖面의 요지를 變更하는 것으로 特許權의 設定登錄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特許出願은 그 補正書를 제출한 때에 特許出願한 것으로 본다.

第50條(出願公告決定후의 補正) ① 特許出願人은 出願公告決定謄本의 송달후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特許出願書에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을 補正할 수 있다. 다만, 그 補正은 第136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第63條의 規定에 의한 拒絶理由의 통지를 받고 그 拒絶理由에 관하여 意見書提出期間내에 補正하는 경우
2. 第70條의 規定에 의한 特許異議申請이 있는 때 그 特許異議申請理由에 관하여 第7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答辯書提出期間내에 補正하는 경우
3.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拒絶査定을 받고 第167條의 規定에 의한 拒絶査定에 대한 抗告審判을 請求한 때에 그 査定의 이유에 관하여 抗告審判請求日부터 30日 이내에 補正하는 경우

② 第136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但書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③ 特許出願書에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관하여 出願公告決定謄本의 송달후에 한 補正이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된 것으로 特許權의 設定登錄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特許出願은 그 補正을 하지 아니하였던 特許出願에 관하여 特許된 것으로 본다.

第51條(補正却下) ① 審判官은 特許出願書에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관하여 出願公告決定謄本의 송달전에 한 補正이 그 明細書 또는 圖面의 요지를 變更하는 것인 때에는 決定으로 그 補正을 却下하여야 한다.

② 審査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決定이 있는 때에는 特許出願人에게 당해

決定謄本의 송달이 있은 날부터 30日을 경과할 때까지는 당해 特許出願의 査定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出願公告할 것을 決定하기 전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決定이 있는 때에는 出願公告決定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審査官은 特許出願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決定에 대하여 第16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抗告審判을 請求한 때에는 그 審判의 審決이 확정될 때까지 그 特許出願의 審査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審査官은 特許出願書에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관하여 出願公告決定謄本의 송달후에 한 補正이 第5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된 것으로 査定전에 인정된 때에는 決定으로 그 補正을 却下하여야 한다.

⑤ 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決定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決定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第167條의 規定에 의한 抗告審判을 請求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2條(分割出願) ① 特許出願人은 2 이상의 發明을 하나의 特許出願으로 한 경우에는 第47條 및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補正을 할 수 있는 때 또는 補正을 할 수 있는 期間내에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特許出願으로 分割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割된 特許出願(이하 "分割出願"이라 한다)이있는 경우 그 分割出願은 特許出願한 때에 出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分割出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第29條第3項에서 規定하는 他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法 第4條第3項에서 規定하는 特許出願에 해당하는 경우
2. 第30條第2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
3. 第54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
4. 第55條第2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

第53條(變更出願) ① 實用新案登錄出願人 또는 意匠登錄出願人은 그 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意匠登錄出願을 特許出願으로 變更할 수 있다. 다만, 그 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意匠登錄出願에 관하여 최초의 拒絶査定謄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日이 경과한 때 또는 그 實用新案登錄出願日 또는 意匠登錄出願日로부터 5年이 경과한 때(그 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意匠登錄出願에 대하여 최초의 拒絶査定謄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의 期間을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變更된 特許出願(이하 "變更出願"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그 變更出願은 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意匠登錄出願을 한 때에 特許出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變更出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第29條第3項에서 規定하는 他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法第3項에서 規定하는 特許出願에 해당하는 경우
2. 第30條第2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
3. 第54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
4. 第55條第2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出願이 있는 경우에는 그 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意匠登錄出願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④ 第1項但書의 規定에 의한 30日의 期間은 實用新案法第3條 또는 意匠法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第34條 또는 意匠法71條에서 規定한 期間이 연장된 때에는 그 연장된 期間에 한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第54條(條約에 의한 優先權主張) ① 條約에 의하여 大韓民國 國民에게 特許出願에 대한 優先權을 인정하는 當事國 國民이

그 當事國 또는 다른 當事國에 特許出願을 한 후 同一發明을 大韓民國에 特許出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는 때에는 第29條 및 第36條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그 當事國에 出願한 날을 大韓民國에 特許出願한 날로 본다. 大韓民國 國民이 條約에 의하여 大韓民國 國民에게 特許出願에 대한 優先權을 인정하는 當事國에 特許出願한 후 同一發明을 大韓民國에 特許出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고자 하는 者는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되는 최초의 出願日부터 1年 이내에 特許出願하지 아니하면 이를 主張할 수 없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고자 하는 者는 特許出願書에 그 취지, 최초로 出願한 國名 및 出願의 年月日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한 者는 최초로 出願한 國家의 政府가 인정하는 特許出願의 年月日을 기재한 書面, 發明의 明細書 및 圖面의 謄本을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날 중 最先日부터 1年4月 이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條約 當事國에 최초로 出願한 出願日
2. 그 特許出願이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隨伴하는 경우에는 그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되는 出願의 出願日
3. 그 特許出願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他의 優先權主張을 隨伴하는 경우에는 그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되는 出願의 出願日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한 者가 第4項의 期間내에 同項에 規定한 書類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優先權主張은 效力을 喪失한다.

第55條(特許出願등에 의한 優先權主張) ① 特許를 받고자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特許出願한 發明에 관하여 그 者가 特許나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먼저한 出願(이하 "先出願"이라 한다)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發明을 基礎로 하여 優先權을 主張할 수 있다.

1. 그 特許出願이 先出願의 出願日부터 1年을 경과하여 出願된 경우
2. 先出願이 第5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分割出願이나 第5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出願 또는 實用新案法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5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分割出願이나 實用新案法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出願인 경우
3. 先出願이 그 特許出願時에 포기·無效 또는 취하된 경우
4. 先出願이 그 特許出願時에 査定 또는 審決이 확정된 경우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을 主張하고자 하는 者는 特許出願時 特許出願書에 그 취지 및 先出願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隨伴하는 特許出願된 發明중 그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된 先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발명〔그 先出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 또는 工業所有權保護를 위한 파리條約 第4條D(1)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隨伴하는 出願인 경우에는 그 先出願에 관하여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된 出願의 出願時에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發明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第29條第1項 및 第2項·第29條第3項本文·第30條第1項·第36條第1項 내지 第3項·第96條第1項第3號·第98條·第103條·第105條第1項 및 第2項·第129條 및 第136條第3項, 實用新案法第7條第3項 및 同法第25條, 意匠法第45條 및 同法第52條第2項의 規定을 適用함

에 있어서는 그 特許出願은 그 先出願의 出願時에 特許出願한 것으로 본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隨伴하는 特許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發明중 당해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된 先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發明〔그 先出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 또는 工業所有權保護를 위한 파리條約 第4條D(1)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은 隨伴하는 出願인 경우에는 그 先出願에 관하여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된 出願의 出願時에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發明을 제외한다〕은 그 特許出願이 出願公告 또는 出願公開가 된 때에 그 先出願에 관하여 出願公開가 된 것으로 보고 第29條第3項本文 또는 實用新案法第4條第3項本文의 規定을 適用한다. 이 경우 그 先出願이 第19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國際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法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第214條第4項 또는 實用新案法第4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第29條第4項중 "國際出願日에 제출한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범위 또는 圖面과 그 出願飜譯文에 다같이 기재된 發明 또는 考案"은 "國際出願日에 제출한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범위 또는 圖面에 기재된 發明 또는 考案"으로 한다.

·第56條(先出願의 취하등) ①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된 先出願은 그 出願日부터 1年3月을 경과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先出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포기·無效 또는 취하된 경우
2. 査定 또는 審決이 확정된 경우
3. 당해 先出願을 基礎로 한 優先權主張이 취하된 경우

②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隨伴하는 特許出願의 出願人은 先出願의 出願日부터 1年3月을 경과한 후에는 그 優先權主張을 취하할 수 없다.

③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隨伴하는 特許出願이 先出願의 出願日부터 1年3月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優先權主張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계속〉

案 發明特許資料 판매센터 移轉 內

우리 協會 發明特許 관계 資料 판매센터가 지난 5月 4日 發明奬勵館의 移轉과 함께 서울시 江南區 三成洞 韓國綜合展示場(KOEX)別館 2층 發明奬勵館內로 移轉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活用바랍니다.

문의전화 : (서울) 551-5571~2

韓 國 發 明 特 許 協 會